현송세무회계 · 부모님 상속세 신고

상속세 신고기한 체크리스트

기본	외국 주소 상속인	기한 내 신고
6개월	**9개월**	**3% 공제**

· 기산일: **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** (예: 3월 15일 → 9월 30일까지)
· 기한을 넘기면 **무신고가산세 20%** + 납부지연가산세 **1일 0.022%**

내 상황 체크

하나라도 애매하면, 기한 전에 확인하세요

- [] **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, 날짜를 계산해 두셨나요?**
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
- [] **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가족이 있나요?**
 1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·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
- [] **상속재산·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고 있나요?**
 재산 종류·수량·평가가액, 재산분할, 각종 공제 증명
- [] **기한 안에 신고서를 낼 수 있나요?**
 기한 내 신고하면 공제·감면 후 산출세액의 3% 세액공제
- [] **이미 기한이 지났나요?**
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% 감면

현송세무회계
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· 강남역
02-562-0111

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·제69조, 국세기본법 제47조의2·제47조의4·제48조 기준 일반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